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 1544

제안년월일 : 2020년 6월 16일
제 안 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민간위탁 취소에 따른 계약 효력의 유지 대상을 명확히 하며, 취소된 민간위탁 사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새로운 수탁기관과의 협약 체결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위탁 취소나 정지 사유와 피해구제 조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민간위탁 취소시 필요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되는 효력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취소된 민간위탁 사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새로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함(안 제11조제2항)

○ 민간위탁 취소나 정지시의 사유를 명확히 하고 시정요구 등 필요조치의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16조제3항).

○ 민간위탁 취소에 따른 피해구제 조치의 대상을 구체화 함(안 제19조제3항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에 대해서만 효력이 유지되며, 위탁사무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새로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안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의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 제19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위탁의 취소에 따른 시민의 피해 최소화 또는 업무 정상화 등에 필요한 조치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생 략) <신 설>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조치가 완료되는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에 대해서만 효력이 유지되며, 위탁사무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새로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③·④ (개정안과 같음)
제16조(지도·점검 등) ①·② (생 략)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점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점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의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취소·정지 및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①·② (생 략)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신 설>	1. 제13조에 따른 지원의 취소 및 환수	1. ~ 3. (개정안과 같음)
<신 설>	2. 제14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의 환수	
<신 설>	3. 위탁사무의 수행 및 수탁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 및 관련기관 고발 등 조치	
<신 설>	4. 그 밖에 위탁의 취소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그 밖에 위탁의 취소에 따른 시민의 피해 최소화 또는 업무 정상화 등에 필요한 조치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제8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재계약에 관한 사항
5. 제16조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에 대해서만 효력이 유지되며, 위탁사무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새로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따라”를 “따라 취소·정지 및”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의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제3항 중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에 따른 지원의 취소 및 환수
2. 제14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의 환수
3. 위탁사무의 수행 및 수탁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 및 관련기관 고발 등 조치
4. 그 밖에 위탁의 취소에 따른 시민의 피해 최소화 또는 업무 정상화 등에 필요한 조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① (생 략)	제5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제8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재계약에 관한 사항 5. 제16조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생 략)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에 대해서만 효력이 유지되며, 위탁사무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새로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6조(지도·점검 등) ①·② (생 략)	제16조(지도·점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현 행	개 정 안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의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 따라 취소·정지 및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①·② (생 략)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다음 각 호의 ----------.
<신 설>	1. 제13조에 따른 지원의 취소 및 환수
<신 설>	2. 제14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의 환수
<신 설>	3. 위탁사무의 수행 및 수탁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 및 관련기관 고발 등 조치
<신 설>	4. 그 밖에 위탁의 취소에 따른 시민의 피해 최소화 또는 업무 정상화 등에 필요한 조치